

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① 해안경관권역지구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37	해안경관권역	여수시 종화동, 관문동, 남산동, 고소동, 중앙동, 교동, 충무동, 군자동, 돌산읍 우두리 일원	1,033,845	-	1,033,845	-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합 계	1,033,845	100.0	
소 계	420,708	40.7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61,899	5.9
	제1종일반주거지역	237,901	23.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4,051	10.1
	준주거지역	16,857	1.7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29,580	22.2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67,293	25.8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6,264	11.3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경관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4	돌산우두 1지구	특화 경관지구	돌산읍 우두리 755-23번지	21,314	전고-122 '17.4.6	
기정	5	돌산우두 2지구	특화 경관지구	돌산읍 우두리 761-15번지	24,486	전고-122 '17.4.6	
기정	6	돌산대교동단	특화 경관지구	돌산읍 우두리 816번지	13,268	전고-122 '17.4.6	
기정	7	남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남산동 225-2번지	28,722	전고-122 '17.4.6	
기정	8	고소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고소동 264-1번지	93,219	전고-122 '17.4.6	
기정	9	종화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종화동 626번지	47,051	전고-122 '17.4.6	
기정	10	돌산우두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돌산읍 우두리 789-2번지	35,844	전고-122 '17.4.6	
기정	11	돌산우두 4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돌산읍 우두리 799-52번지	38,113	전고-122 '17.4.6	

▪ 고도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0	중앙동2호광장	고도지구	중앙동 2호광장 일원	13m 이하	8,310	건고-560호 '87.11.14	
기정	11	남산동	고도지구	남산동 향만시설 보호지구 일원	16m 이하	48,767	전고-241호 '04.12.31	
기정	13	고소동	고도지구	고소동 준공업지역	12m 이하	44,092	전고-241호 '04.12.31	
기정	26	수산시장	고도지구	남산동 향만시설 보호지구 일원	20m 이하	13,948	전고-220호 '09.05.04	
기정	27	남산지구	고도지구	남산동 58번지	12m이하 (단, 건축물높이는 교량상관하부미만)	18,347	전고-122 '17.4.6	
기정	28	남산지구(1)	고도지구	남산동 75-4번지	12m 이하	7,383	전고-122 '17.4.6	
기정	29	남산중앙지구	고도지구	남산동 667일원 ~ 고소동 282-1 일원	20m 이하	94,985	전고-122 '17.4.6	
기정	30	종화지구	고도지구	종화동 458-5번지	16m 이하	30,460	전고-122 '17.4.6	
기정	31	거북선대교 남단	고도지구	돌산읍 우두리 780번지	20m 이하 (단, 건축물높이는 교량상관하부미만)	46,473	전고-122 '17.4.6	
기정	32	돌산우두 5지구	고도지구	돌산읍 우두리 780-10번지	20m 이하	83,075	전고-122 '17.4.6	
기정	33	돌산우두 6지구	고도지구	돌산읍 우두리 796-24번지	20m 이하	16,395	전고-122 '17.4.6	

※()는 구역 내 지구면적

▪ 보호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군자지구 (진남관)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군자동 472번지 일원	33,550	건고-560 '87.11.14	
기정	3	고소지구 (대첩비각)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고소동 417번지 일원	6,550	건고-560 '87.11.14	
기정	1	신·구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덕충, 종화, 교동, 중앙동 일원	64,486 (104,993)	건고-313호 '74.09.14	
기정	3	우두리 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돌산읍, 전두리 해안일원	133,600 (120,516)	건고-560호 '87.11.14	

※()는 구역 내 지구면적

▪ 취락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89	남산지구	자연취락지구	남산동	-	6,710	전고-220호 '09.05.04	
기정	206	남산지구	자연취락지구	남산동 61-1 일원	-	6,085	전고-106 '15.4.30	

▪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중심 시가지	수정, 고소, 공화, 중앙, 충무동, 덕충, 교동, 관문, 서교, 일원	611,687 (213,210)	건고-560호 '87.11.14	

※()는 구역 내 지구면적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개)	연장(m)	면적(m ²)	노선 수(개)	연장(m)	면적(m ²)	노선 수(개)	연장(m)	면적(m ²)	노선 수(개)	연장(m)	면적(m ²)
합계	66	35,202 (15,703)	653,922.7 (197,502)	14	8,521 (4,356)	156,220 (74,510)	27	17,471 (7,910)	321,103 (88,961)	25	9,210 (3,437)	176,599.7 (34,076)
대로	3	12,550 (1,070)	345,250 (28,650)	-	-	-	1	6,300 (380)	189,000 (11,400)	2	6,250 (690)	156,250 (17,250)
중로	14	13,506 (5,661)	237,080.7 (98,328)	8	7,101 (3,095)	142,020 (61,900)	4	6,105 (2,468)	91,575 (37,020)	2	300 (98)	3,485.7 (1,008)
소로	49	9,146 (8,972)	71,592 (68,924)	6	1,420 (1,261)	14,200 (12,610)	22	5,066 (5,062)	40,528 (40,496)	21	2,660 (2,649)	16,864 (15,818)

※()는 구역 내 도로 연장 및 면적임

▪ 도로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1	30	주간선 도로	6,300 (380)	2호광장 중앙동 1574-2전	신월동계획구역계 신월동 1616-1	일반 도로		건고-172호 '76.09.16	
기정	대로	3	1	17~25 (25~30)	주간선 도로	5,000 (270)	2호광장 중앙동 714대	대3-4 만덕동 337-1잡	일반 도로	여수역	건고-171호 '76.04.25	
기정	대로	3	3	25	주간선 도로	1,250 (420)	4호광장 서교동 550-3대	중1-8 남산동 95-3전	일반 도로	남산 공원	건고-171호 '76.04.25	
기정	중로	1	1	20	보조 간선도로	1,838 (1,110)	2호광장 중앙동 417도	18호광장 수정동 203-2도	일반 도로		건고-37호 '96.03.27	
기정	중로	1	2	20	보조 간선도로	1,100 (685)	3호광장 관문동 291도	소3-72 중화동 277-1전	일반 도로	차산 공원	건고-37호 '96.03.27	
기정	중로	1	8	20	주간선 도로	1,560 (160)	대2-1 봉강동 241-1대	12호광장 대교동 814-7잡	일반 도로	돌산 연육교	전고-98호 '87.06.13	
기정	중로	1	28	20	주간선 도로	630 (22)	중1-56 중화동 288-1대	중1-57 우두리 776임	일반 도로	터미널 앞	전고-403호 '83.12.09	
기정	중로	1	34	20	보조 간선도로	594	대2-1 교동 514대	중1-1 중앙동 385-3도	일반 도로	-	전고-167호 '95.06.22	
기정	중로	1	56	20	보조 간선도로	746 (92)	18호광장 수정동 191-7전	중1-28 중화동 301-2대	일반 도로	(법면 구간 33.1 ~62.5)	여고-17호 '05.03.12	
기정	중로	1	57	20	보조 간선도로	536 (335)	19호광장 우두리 산701-3임	중1-28 우두리 776-3전	일반 도로		여고-17호 '05.03.12	
기정	중로	1	61	20	보조 간선도로	97	중2-7 남산동 406-1대	이손기공 남산동 24-2도	일반 도로		여고-17호 '05.03.12	
기정	중로	2	7	15	보조 간선도로	290	대3-3 교동 532대	중1-34 교동 681도	일반 도로	남산동	전고-98호 '87.06.13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4	15	보조 간선도로	110	중1-1 종화동 526-3대	중1-2 종화동 590대	일반 도로	종화 파출소	건고-560호 '87.11.14	
기정	중로	2	18	15	보조 간선도로	5,630 (1,993)	12호광장 우두리 79-150도	중1-23 우두리 219-1답	일반 도로	들산	건고-560호 '87.11.14	
기정	중로	2	106	15	집산도로	75	종화동 526-8도	중2-14 종화동 526-6제	일반 도로		여고-67호 '09.05.13	
기정	중로	3	7	12	보조 간선도로	50	대3-1 중앙동 498-1도	진남관 중앙동 500-1도	일반 도로	진남관	전고-82호 '79.05.08	
기정	소로	1	47	10	국지도로	299 (140)	대2-1 충무동 621-16대	소2-480 충무동 88도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기정	소로	1	48	10	국지도로	324	2호광장 중앙동 707도	소1-47 중앙동 89도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기정	소로	1	49	10	국지도로	88	대2-1 교동 400-125대	소1-47 교동 628대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기정	소로	1	55	10	국지도로	325	대2-1 서교동 605-17대	중2-7 서교동 681도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기정	소로	1	56	10	국지도로	327	대2-1 서교동 605-17대	소1-236 남산동 596대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기정	소로	1	65	10	국지도로	57	중1-34 서교동 677-1대	중1-6 서교동 677-6대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기정	소로	2	187	8	국지도로	164	소2-508 중앙동 42-2도	소2-654 중앙동 67-1전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기정	소로	2	335	8	국지도로	110	대3-3 남산동 179-1대	항만시설보호지구 1 남산동 196-2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80	8	국지도로	510	대3-1 교동 680도	중1-6 교동 269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81	8	국지도로	122	대2-1 중앙동 400-99대	소2-480 중앙동 92-3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82	8	국지도로	141	대2-1 교동 425대	소2-489 교동 235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83	8	국지도로	195	대2-1 교동 439대	소2-481 교동 380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84	8	국지도로	142	대2-1 중앙동 348도	소2-489 중앙동 211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85	8	국지도로	132	대2-1 중앙동 735대	소2-489 중앙동 606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86	8	국지도로	32	중1-1 교동 416도	소2-457 교동 439-1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04	8	국지도로	44 (40)	소2-205 종화동 756-3대	소1-44 종화동 706-1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05	8	국지도로	472	중1-1 종화동 74-2대	소2-504 종화동 756-3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06	8	국지도로	65	중1-2 종화동 1014대	소2-505 종화동 988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07	8	국지도로	520	소2-508 고소동 294-1대	소2-508 고소동 65도	일반 도로		건고-207호 '89.11.24	
기정	소로	2	508	8	국지도로	1,169	중1-2 종화동 163-9도	소2-654 고소동 68전	일반 도로		건고-207호 '92.11.13	
기정	소로	2	510	8	국지도로	82	대2-1 중앙동 440대	중1-34 중앙동 482-2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11	8	국지도로	82	대2-1 교동 461대	중1-34 교동 495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12	8	국지도로	420	중1-6 교동 641대	대2-1 중앙동 779대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기정	소로	2	515	8	국지도로	123	중2-7 교동 5도	남산동 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54	8	국지도로	70	소2-187 고소동 69-3도	소2-508 고소동 66-4도	일반 도로		건고-207호 '89.11.24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656	8	국지도로	110	대3-1 중앙동 790-4대	소2-508 고소동 661-2대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기정	소로	2	690	8	국지도로	110	대3-1 고소동647-1도	소2-508 고소동654-1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465	8	국지도로	129 (125)	중2-18 우두리797-33대	우두리 799-81전	일반 도로		여고-314호 '18.10.18	
기정	소로	2	1504	8	국지도로	251	중1-2 (중화동407도)	소2-505 (중화동756-11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54	6	국지도로	64	대3-1 고소동375대	소2-508 고소동391-4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73	6	국지도로	89	소1-47 군자동652도	소2-480 군자동469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75	6	국지도로	291	대1-1 충무동614-14대	소2-480 충무동467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88	6	국지도로	83 (76)	대3-1 군자동1132대	중3-1 군자동1109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95	6	국지도로	76	소3-98 충무동516대	소3-143 충무동526대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기정	소로	3	98	5	국지도로	56	주차장52 (중앙동510대)	중3-1 (군자동381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01	6	국지도로	64	중1-6 교동626대	소1-49 교동624-1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02	6	국지도로	220	대3-1 중앙동670-1대	소2-482 교동240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27	6	국지도로	63	중1-6 중앙동677-18대	중2-7 중앙동677-26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28	6	국지도로	63	중1-6 중앙동677-38대	중2-7 중앙동678-14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29	6	국지도로	63	중1-6 중앙동679-12대	중2-7 중앙동679-50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43	6	국지도로	102	소2-489 군자동199대	중3-1 군자동305대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기정	소로	3	457	6	국지도로	120	대3-1 중앙동432대	중1-1 중앙동358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496	6	국지도로	134	중1-1 중앙동285-3대	중1-1 중앙동373도	일반 도로		여고-33호 '95.06.22	
기정	소로	3	701	6	국지도로	84	중2-18 우두리 796-15대	소3-705 우두리 799-14전	일반 도로		건고-10호 '90.01.22	
기정	소로	3	702	6	국지도로	113	중3-701 우두리 799-81전	우두리 796-46전	일반 도로		건고-10호 '90.01.22	
기정	소로	3	703	6	국지도로	14	중2-18 우두리 796-34전	소3-702 우두리 796-34전	일반 도로		건고-10호 '90.01.22	
기정	소로	3	704	6	국지도로	14	중2-18 우두리 796-49전	소3-702 우두리 796-49전	일반 도로		건고-10호 '90.01.22	
기정	소로	3	705	6 (3)	국지도로	439	소3-702 우두리 799-81입	중2-18 우두리799-159전	일반 도로		건고-10호 '90.01.22	
기정	소로	3	1181	4	국지도로	216	대3-3 (남산동405대)	대3-3 (남산동 235-1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82	6	국지도로	160	(교동 667대)	교동 229종	일반 도로			

※()는 구역 내 도로 연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722	-	17,722		
기정	2	노외주차장	남산동 55-11도	430	-	430	건고-560호 '87.11.14	
기정	52	노외주차장	중앙동 511번지 일원	4,836	-	4,836	여고-85호 '06.06.13	
기정	53	노외주차장	남산동 12-1번지 일원	4,040	-	4,040	여고-85호 '06.06.13	
기정	163	노외주차장	교동 221번지 일원	1,032	-	1,032	여고-361호 '18.12.06	
기정	175	주차장	교동 669대	2,478	-	2,478	여고-487호 '21.11.11	
기정	176	주차장	중앙동 280대	4,906	-	4,906	여고-487호 '21.11.11	

▪ 항만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77,515 (10,817)	-	277,515 (10,817)		
기정	1	항만	여객선 터미널	교동682-1번지 일원	9,017	-	9,017	건고9호 '82.01.09	
기정	3	항만	국가어항	국동	268,498 (1,800)	-	268,498 (1,800)	전고-220호 '09.05.04	

※항만시설은 금회 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시설이 아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임
※()는 구역 내 항만시설 면적

▪ 궤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m)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 계						1,500 (241)	27,746 (5,303)		
기정	1	케이블카	돌산읍 우두리 794-89	수정동 76번지 일원 (자산공원)	-	1,500 (241)	27,746 (5,303)	전고-30 '12.02.14	

※궤도시설은 금회 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시설이 아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임
※()는 구역 내 궤도시설 면적

2) 공간시설

▪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065	-	16,065		
기정	1	광장	교통광장	돌산읍 우두리 776임 일원	3,081	-	3,081	건고-37호 '76.03.27	
기정	2	광장	교통광장	중앙동 로타리	2,826	-	2,826	건고-37호 '76.03.27	
기정	12	광장	교통광장	돌산공원 앞	1,500	-	1,500	전고-171호 '86.04.25	
기정	19	광장	교통광장	돌산읍 우두리 산341-5도 일원	2,918	-	2,918	익산청-235호 '05.12.05	
기정	42	광장	경관광장	중앙동 400 일원	5,740	-	5,740	여고-8호 '08.01.08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0,135 (38,261)	-	40,135 (38,261)		
기정	139	종포해양공원	수변공원	종화동 526-7 일원	27,640	-	27,640	전고-220호 '09.05.04	
기정	193	이순신장군공원	수변공원	중앙동 385-6 일원	7,866 (5,992)	-	7,866 (5,992)	여고-46 '15.03.12	
기정	204	오포대공원	역사공원	고소동 427번지 일원	1,227	-	1,227	여고-52 '16.03.17	
기정	207	돌산대교제1공원	소공원	돌산읍 우두리 799-157번지 일대	1,669	-	1,669	여고-287 '16.11.10	
기정	208	돌산대교제2공원	소공원	돌산읍 우두리 814-6번지 일대	1,733	-	1,733	여고-287 '16.11.10	

※()는 구역 내 공원 면적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97	-	497		
기정	13	공공공지	고소동 53번지 일원	132	-	132	여고-361호 '18.12.06	
기정	14	공공공지	종화동 360번지 일원	77	-	77	여고-361호 '18.12.06	
기정	15	공공공지	돌산읍 우두리 799-29번지 일원	110	-	110	여고-361호 '18.12.06	
기정	16	공공공지	남산동 산4-11번지 일원	178	-	178	여고-361호 '18.12.06	

3) 방재시설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폭원 (m)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 계							330	-	65,692 (12,580)		
기정	1	하천	하천(준용)	둔덕철교	남산교	-	330	-	65,692 (12,580)	'82.12.23	

※()는 구역 내 하천 면적

▪ 방수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544	-	3,544		
기정	2	배수펌프장	남산동 710 일원	3,544	-	3,544	여고-141호 '08.10.13	

라. 가구·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1)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 및 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자원을 살리기 위한 보전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가구를 구역으로 설정하여, 가구 및 획지계획을 대체토록 함 구역별 특성에 따라, 주거관리, 상업, 활성화, 관광기능유도, 자연경관 4개 구역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회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산읍 우두리 799-192번지 일원(205m²) D3→A2 - 종화동 583-3번지 일원(5,025m²) A6-2→B1

2) 공동개발(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자율적 (선택적) 공동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별 2필지 이상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과소필지, 부정형, 맹지, 전면 폭 너비가 지나치게 좁은 필지, 인접대지와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현황도로를 포함, 형태 부정형, 인접필지가 맹지가 되는 경우는 불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내 필지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이하의 필지가 다수로서 인접필지의 동일 소유는 자율적 공동개발 권장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주거관리구역(A1) (변경)

▪ 기 정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바닥면적 1,000m²미만)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바닥면적 1,000m²미만)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 종교집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나목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 변경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바닥면적 1,000㎡미만)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바닥면적 1,000㎡미만)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집회장 • 제조업소 (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위한 경우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나, 너목
	교육연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노유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 용도 		

2) 주거관리구역(A2) (변경)

▪ 기 정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목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 병원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 변경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제조업소 (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위한 경우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목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 병원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3) 주거관리구역(A3) (변경)

▪ 기 정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목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 병원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 변경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제조업소 (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위한 경우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목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 병원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4) 주거관리구역(A4)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제조업소, 수리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목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 병원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5) 주거관리구역(A5-1, A5-2)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제조업소, 수리점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목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 병원	
	교육연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바닥면적 3,000㎡ 미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 해당건축물은 시가지경관지구 내 설치 불가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6) 주거관리구역(A6)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제조업소, 수리점 • 노래연습장(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러목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 병원	
	교육연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자 복지시설	
	운동시설	• 탁구장 등(실외골프연습장 제외), 체육관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공장	• 공장 중 인쇄업, 봉제업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7) 주거관리구역(A6-2)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 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 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제조업소, 수리점 • 노래연습장(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러목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 병원		
	교육연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자 복지시설		
	운동시설	• 탁구장 등(실외골프연습장 제외), 체육관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공장	• 공장 중 인쇄업, 봉제업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 해당 건축물은 시가지경관지구 내 설치 불가	
	자동차 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기타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8) 상업활성화구역(B1) (변경)

▪ 기 정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1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러목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의료시설	• 병원	
	운동시설	• 탁구장 등(실외골프연습장 제외), 체육관, 운동장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립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 변경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제1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제조업소 (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위한 경우에 한함)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러목
	문화 및 집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의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구장 등(실외골프연습장 제외), 체육관, 운동장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립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세차장 	
	관광휴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 용도 		

9) 상업활성화구역(B2-1, B2-2) (변경)

▪ 기 정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1종근린생활 시설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단란주점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목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의료시설	• 병원	
	운동시설	• 탁구장 등(실외골프연습장 제외), 체육관, 운동장	
	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립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	• 단란주점·유흥주점·유원시설업의 시설·무도장·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 변경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1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제조업소 (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위한 경우에 한함) • 단란주점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목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의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구장 등(실외골프연습장 제외), 체육관, 운동장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립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란주점·유흥주점·유원시설업의 시설·무도장·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세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 용도 		

10) 상업활성화구역(B3) (변경)

▪ 기 정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제1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러목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 소매시장, 상점	
	의료시설	• 병원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 변경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1종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계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제조업소 (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위한 경우에 한함)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러목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시장, 상점 	
	의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업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립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세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 용도 		

11) 상업활성화구역(B4-1) (변경)

▪ 기 정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제1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단란주점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더, 러목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의료시설	• 병원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립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 변경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제1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제조업소 (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위한 경우에 한함) • 단란주점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목
	문화 및 집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의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업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립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세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 용도 		

12) 상업활성화구역(B4-2) (변경)

▪ 기 정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1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단란주점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더, 러목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의료시설	• 병원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립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 변경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제1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제조업소 (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위한 경우에 한함) • 단란주점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목
	문화 및 집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의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업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립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세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 용도 		

13) 관광기능유도구역(C1)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1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제조업소, 수리점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러목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소재지 생산제품 해당)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 항만시설	
	의료시설	• 병원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공장	• 공장 중 인쇄업, 봉제업 등	
	창고시설	• 창고(중 * 입항, * 냉동),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도로류 판매소, 고압가스 충전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정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자원순환관련시설	• 하수처리,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처분·감량화시설	
	* 해당건축물의 건축물은 지방해양수산청 협의 건축물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14) 관광기능유도구역(C2)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1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등) • 종교집회장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 제조업소, 수리점 •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가, 나, 다, 라,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러목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소재지 생산제품 해당)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 항만시설	
	의료시설	• 병원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공장	• 공장 중 인쇄업, 봉제업 등	
	창고시설	• 창고(중 * 입항, * 냉동),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 해당건축물의 건축물은 지방해양수산청 협의 건축물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15) 자연경관구역(D1)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집회장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나, 라, 바, 아, 자, 타, 파, 하, 거목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교육연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야영장시설 	
	창고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고, 집배송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가축시설, 작물지배사, 종묘배양시설, 온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 용도 		

16) 자연경관구역(D2)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1종근린생활 시설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등 • 탁구장, 체육도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 종교집회장 • 서점 • 사진관, 표구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일반음식점 • 독시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등 •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 • 다중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나, 라, 바, 아, 자, 타, 파, 하, 거목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 병원(정신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야영장시설	
	창고시설	• 창고(농·임·축·수산업)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작물지배사, 종묘배양시설, 온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17) 자연경관구역(D3)

구분	건축법상 용도분류		비 고
허용용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제1종근린생활 시설 (연면적 합계 500㎡ 미만)	•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1] 3호가, 나, 다목
	제2종근린생활 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	• 일반음식점 • 기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 자, 타목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 병원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야영장시설	
	운동시설	• 탁구장 등(골프장 및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체육관, 운동장	
	창고시설	• 창고(500㎡ 미만, 하역장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축사(양어시설 및 부화장에 한함), 종묘배양시설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18) 건축물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건폐율 계획

구분	구분	건폐율(%)	비 고
주거관리구역	A1	50	제1종전용주거지역
	A2, A3, A4, A5-1, A5-2	60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A6	70	준주거지역
	A6-2	70	
상업활성화구역	B1, B2-1, B2-2, B3, B4-1, B4-2	80	일반상업지역
관광기능유도구역	C1, C2	70	준공업지역
자연경관구역	D1, D3	20	자연녹지지역
	D2	60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 용적률 계획

구분	용적률(%)	비 고	
주거관리구역	A1	100	제1종전용주거지역
	A2, A3, A4	200	제1종일반주거지역
	A5-1, A5-2	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A6	500	준주거지역
	A6-2	250	
상업활성화구역	B1, B2-1, B2-2, B3, B4-1, B4-2	1,000	일반상업지역
관광기능유도구역	C1, C2	400	준공업지역
자연경관구역	D1, D2, D3	100	자연녹지지역

■ 건축물 높이(층수) 계획

구분	최고높이(m)	최고층수	비 고	
주거관리구역	A1, A2, A3	12m	3층	시가지경관지구
	A4	-	4층	
	A5-1	- (12m)	- (3층)	() : 시가지경관지구
	A5-2	-	-	
	A6	20m	-	고도지구
	A6-2	- (12m)	- (3층)	() : 시가지경관지구
상업활성화구역	B1	- (20m)	-	() : 고도지구
	B2-1, B2-2	- (13m, 20m)	-	() : 고도지구
	B3	- (13m, 20m)	-	() : 고도지구
	B4-1, B4-2	-	-	
관광기능유도구역	C1	12m, 16m, 20m	-	고도지구
	C2	12m, 16m, 20m	-	고도지구
자연경관구역	D1, D2	12m	4층	고도지구
	D3	12m	3층	특별경관지구

※인접한 지역에 문화재 등이 있어 관련법에 의해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의한 높이제한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제시된 높이보다 강화된 기준일 경우 이를 우선 적용

※거북선대교 남단, 돌산대교 주변의 최고높이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 이외에 용도지구에서 정한 교량상판 하부미만을 따름

※A4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

바. 건축물의 형태, 색채 및 외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주거관리구역(A1, A2, A6)

구분	내용	비고
지붕 및 외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A1, A2 구역의 건축물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도는 최소1:4이상 ~ 최대 1:3이하로 하고, 지붕면적을 70% 이상 확보 (A6구역 동일기준 권장) 실외기나 적재물이 보이지 않도록 조성하고 배후에서의 조망을 고려 벽돌, 석재, 돌담 등 자연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된 색상 범위 내에서 페인트 마감은 허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의 자연소재 및 색채를 사용하여 생태환경과 조화로움 형성 색범위는 구릉지-녹지의 위치적 특성에 따라 자연의 색인 R-GY계열 적용 지붕의 색은 R-Y계열로 광이 나지 않는 재질로 사용 벽면은 원색계열 사용은 금하여 채도 8이하로 강조색으로 지정하여 사용면적을 10% 이내로 제한 	
출입구 및 경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의 상가활용시 가로변에 면한 입면의 1층은 입면적 60%이상 쇼윈도우를 확보하여 판매시설 이미지 부여 가로변으로 출입구 설치 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출입구를 1m이상 들여 조성하거나, 미단이 문을 설치 옥상, 벽면, 자투리 공간에 녹화를 권장하고 사면부에는 녹화 및 식재림 조성 	

▪ 주거관리구역(A3, A4, A5-1, A6-2)

구분	내용	비고
지붕 및 외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A3 구역의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도는 최소1:4이상 ~ 최대1:3이하로 하고, 지붕면적은 70% 이상 확보 A4, A5-1구역의 건축물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도는 최소1:4이상 ~ 최대1:2이하, 면적은 40% 이상 확보 옥상에 실외기나 적재물이 보이지 않도록 조성 공동주택의 저층부 3개층은 조화를 고려하여 저채도의 친환경 소재로 마감 벽돌, 석재, 돌담 등 자연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된 색상 범위 내에서 페인트 마감은 허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은한 이미지의 정주성을 강조하는 PB-GY계열을 적용하고, 지붕은 재료에 따라 RP-Y계열로 광이 나지 않는 점토나 콘크리트 소재로 사용, 평지붕도 유사색 적용 A3지역의 고층건물은 위압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명도차를 활용한 단계적 사용 A3지역의 지붕은 지역 컨셉에 따라 R-Y계열의 고채도 8~12를 적용 	
출입구 및 경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의 상가활용시 가로변에 면한 입면의 1층은 입면적 60%이상 쇼윈도우를 확보하여 판매시설 이미지 부여 가로변으로 출입구 설치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출입구를 1m이상 들여 조성하거나, 미단이 문을 설치 옥상, 벽면, 자투리 공간에 녹화를 권장하고 사면부에는 녹화 및 식재림 조성 	

▪ 주거관리구역(A5-2)

구분	내용	비고
지붕 및 외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은 진남관 기와형식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선형이나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도는 최소 1:4이상 ~ 최대1:3이하, 지붕면적은 70%이상 확보 저층부 벽면에 친환경 소재로 마감하여 역사지주변과 조화되도록 조성 벽돌, 석재, 돌담 등 자연소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된 색상 범위 내에서 페인트 마감은 허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경관에 부합하는 R-Y계열의 색채 범위를 지정 저명도-저채도 색채를 도입하여 인지성 저감 및 역사시설과의 일체감 도모 지붕의 색은 전통기와와 어울리는 N계열로 점토나 콘크리트 소재를 권장 원색계열 사용은 금하고 채도 6이상의 강조색은 지양하며, 사용시 광고물내에서 사용 제한 	
출입구 및 경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계부에는 주변 도로와 노후된 주거, 판매시설 차폐를 위한 완충역할의 식재를 밀집하여 설치 가로변으로 출입구 설치 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출입구를 1m이상 들어 조성하거나, 미단이 문을 설치 역사경관과의 인접지역은 식재림을 조성하여 주거지와 자연적 경계 조성 	

▪ 상업활성화구역(B1, B3)

구분	내용	비고
지붕 및 외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의 형태 및 경사도는 규제하지 않으나 가로를 따라 주변 건물과 일치할 수 있도록 좌, 우 인접한 건물과 동일한 형태의 지붕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실외기, 설비 등은 전면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뒷면에 설치 외벽 마감은 지정된 색상 범위 내에서 자연석재, 도장재, 타일류 등 제한은 없으나, 1개동에 주재료는 5종류 초과 사용은 금지(단, 장식적인 요소 가미인 경우는 추가허용)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기찬 거리 조성을 위해 다채로운 칼라의 마감재를 적용하되 고명도, 고채도는 지양하고 채도10이하를 강조색으로 지정하여 사용면적을 10%이내로 제한 색범위는 R~PB계열로 주거와 상업 혼용하는 칼라 적용 보행로와 공지의 바닥 마감은 동일하게 하고 차량이나 주차바닥은 색을 분류 	
출입구 및 경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변에 면한 입면의 1층은 입면적 60%이상 쇼윈도우를 확보하여 판매시설 이미지 부여 건물과 건물사이에 식재 및 차폐물 설치를 지양하여 배후 도로에서 해안조망을 향한 통경축 확보 	

▪ 상업활성화구역(B2-1, B4-1)

구분	내용	비고
지붕 및 외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의 형태 및 경사도는 규제하지 않으나 경사지붕설치시에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거관리구역(A4, A5-1)과 동일한 기준을 권장 실외기, 설비 등은 전면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뒷면에 설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기찬 거리 조성을 위해 다채로운 칼라의 마감재를 적용하되 고명도, 원색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채도8 이하를 강조색으로 지정하여 사용면적을 10%이내로 제한 보행로와 공지의 바닥 마감은 동일하게 하고 차량이나 주차바닥은 색을 분류 옥외광고물은 브랜드 고유의 색을 허용하되 배경은 N5계열로 지정하여 일체화된 상업거리 조성 	
출입구 및 경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변에 면한 입면의 1층은 입면적 60%이상 쇼윈도우를 확보하여 판매시설 이미지 부여 가로변으로 전면공지를 보행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장, 적치물 등 금지와 도로 내 보도와 유사한 재료사용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공지를 활용하여 이동중에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조성 	

▪ 상업활성화구역(B2-2, B4-2)

구분	내용	비고
지붕 및 외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의 형태 및 경사도는 규제하지 않으나 경사지붕 설치 시에는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거관리구역(A5-2)과 동일한 기준을 권장 외벽은 석재나 슬레이트 등 자연재료나 유사한 색의 뽐칠 권장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지역이지만 역사경관과 인접하여 체류문화권과 연계된 R-Y계열로 제한 지붕의 색은 전통기와와 어울리는 N계열로 점토나 콘크리트 소재를 권장 투과성이 높은 재료의 적용으로 개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권장 원색계열 사용은 금하고 채도 6이상의 강조색은 지양하며, 사용 시 광고물 내에서 사용 제한 	
출입구 및 경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계부에는 주변 도로와 노후된 주거, 판매시설 차폐를 위한 완충역할의 식재를 밀집하여 설치 전면공지를 보행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장, 적치물 등 설치를 금지하고, 도로 내 보도와 일체된 재료를 사용하면서 전통적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바닥재 및 시설 설치 권장 	

▪ 관광기능유도구역(C1,C2)

구분	내용	비고
지붕 및 외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의 형태 및 경사도는 규제하지 않으나 경사지붕 설치 시에는 박공형을 지양하고 벽과 연결되는 현대적인 구조 권장 외부에 노출되는 옥상녹화는 지양하고 바닥은 방수페인트 노출보다는 타일 등 바닥 마감재 사용 권장 시설물이나 적재물, 실외기, 설비 등은 전면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뒷면에 설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시설 조성의 일체감을 부여하기 위한 색채를 지정하여 해안위치의 특성과 건물간의 통일감을 고려하여 GY-PB계열로 구성 1층은 투과성이 높은 무색상 재료의 적용으로 개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권장 지붕의 색은 B~G계열로 점토나 콘크리트 소재를 권장하며, 컬러강판 사용을 허용하고 평지붕도 유사한 색 적용 	
출입구 및 경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으로의 보행축 확보를 위한 공지와 보도를 일체화하고 식재와 시설물의 높이 3m(1개층 높이)이하 설치 및 조망을 고려한 일정한 이격거리 확보 건물과 건물사이에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여 배후 도로에서 해안조망을 향한 통경축과 보행로 확보 	

▪ 자연경관구역(D1, D2, D3)

구분	내용	비고
지붕 및 외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도는 최소1:4이상 ~ 최대1:3이하로 조성하고 지붕면적은 70% 이상 확보 옥상에 실외기나 적재물이 보이지 않도록 조성 구릉지의 경사 방향과 일치하는 형태로 지형과 조화되는 박공지붕 조성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하며 지정된 색상 범위 내에서 벽돌, 석재 등 마감재 사용 적극 권장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의 자연소재 및 색채를 사용하여 생태환경과 조화로움 형성 색범위는 YR~BG계열로 적용, 해안에 인접한 지역은 GY~BG계열 사용을 권장 지붕의 색은 R~Y계열로 광이 나지 않는 점토나 콘크리트 소재로 사용 벽면은 원색계열 사용은 금하여 채도 8이하로 강조색으로 지정하여 사용면적을 10% 이내로 제한 	
출입구 및 경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변으로 출입구 설치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출입구를 1m이상 들어 조성하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 옥상, 벽면, 자투리 공간에 녹화를 권장하고 사면부에는 녹화 및 식재림 조성 D1, D2구역의 소나무 군락은 우수한 녹지경관자원으로서 돌산대교 주변의 조망을 고려하여 보전을 권장 	

사.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적용지역		계획내용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전체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색과 동일색상으로 배경색을 정하고 문자는 명도차이를 두도록 함 • 하나의 간판에 색채는 배경색을 포함하여 3가지 이상 사용 자제 • 단일 건물의 간판 색채는 5가지 이상 사용 자제 • 주변의 환경 및 건물과의 조화를 위해 명도차를 기반으로 한 배색 권장 • 입체형문자를 사용하며 야간에는 흰색의 글자이미지가 보이도록 권장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업소 1개 가로형 간판을 원칙(총수량 규제범위 외의 소형 돌출간판(면적 0.36㎡이하, 두께 0.2m 이하)에 대해 허용) •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1개 추가 가능 • 가로형 간판만 허용하며, 세로형, 돌출형, 지주형 간판의 설치는 금한다 • 규격은 업소의 가로폭 80%이내로 하고 세로폭은 1m내로 한정
	형태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 판류형, 바형, 문자형 설치 • 2층 이상 : 바형, 문자형 설치 • 최상층 : 문자형 설치 • 커튼월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벽면에는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입체형으로 표시 • 내용 :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표 표기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 및 조명은 권역별 권장 색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고효율 광원인 LED 제품 의무 사용 • 판류형 간판은 바닥면 전체 조명 사용 불가 •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간접조명 방식 권장 • 입체형 광고물은 광원을 매립하여 표기 내용만을 강조

※ 지구단위계획 내 모든 옥외광고물 설치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여수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따라야 하며, 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원도심권, 오동도 주변 등)은 해당 고시의 허가(신고) 기준을 우선 적용토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함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 및 용도변경(표시변경 포함) 시에는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그 적정성을 인정받아야 함

■ 야간조명에 관한 사항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A3, A5, A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색상의 조명은 지양하고 주거위주를 고려한 무색의 간접조명 활용 • 고층의 위압감을 줄일 수 있는 저층 위주의 조명설치계획 •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도로의 밝기를 충분히 확보 • 주거지역을 고려한 눈부심 및 빛공해 저감을 고려하여 계획 (조도 : 11~20lx, 휘도 : 6~10cd/m²) • 주거지와 어울리는 편안한 2500~3500K 색온도 	
A5-2, B2-2, B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색상의 조명은 지양하고 역사지를 고려한 무색의 간접조명 활용 • 지붕 및 옥탑부 등 일부 강조 조명 지양, 건축물 전체 조명과의 조화 고려 • 역사문화거점으로서 관광을 고려한 편안하고 균일한 조명 범위 제시 (조도 : 11~15lx, 휘도 : 6~10cd/m²) • 역사지 고유의 색과 어울리는 온화한 3000~3500K 색온도 	
B2-1, B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활동 및 여가활동 증진 도모를 위한 밝고 쾌적한 빛환경 형성 • 광장, 입구에 인지성을 주면서 요란한 점멸방식을 지양, 다양한 조명색상 활용 • 건축물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직접조명을 지양하고 권역별 고유의 색상이 드러나도록 은은하게 조성 • 야간에도 활기를 줄 수 있는 조도 : 21~25lx, 휘도 : 16~20cd/m² 적용 • 건물 고유의 색을 살리는 3000~4000K 색온도 및 색채범위와 동일한 조명색 	
B1, B3 C1, C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은 간접조명을 통한 매쓰감을 부각하고 시설물 조명과 연계 • 건축물에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조명 지양, 매쓰감을 살릴 수 있는 조명계획 • 지역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조도 : 16~25lx, 휘도 : 11~15cd/m² 적용 • 관광지의 야간경관을 잘 살리는 3000~4500K 색온도 및 색채범위와 동일한 조명색 사용 	
A1, A2, D1, D2, 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릉지의 마을 전체가 통일된 조명계획을 통해 조화를 유도 • 건축물 조명은 권역별 고유의 색상이 드러나도록 은은하게 조성 •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도로의 밝기를 충분히 확보 • 직접광원의 노출 및 과도한 색상의 변화-반복점멸 금지 •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도 : 6~10lx, 휘도 : 1~5cd/m² 적용 • 주거지와 자연의 색을 드러내는 2500~3000K 색온도 	